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매매하는”을 “매매(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 중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a-1-2 및 2a-1-2는”을 “1a-1-2, 1a-4-2, 2a-1-2 및 2a-4-2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중 “투자중개업의”를 “같은 표 2-14-1, 2-14-2, 2l-1-1 및 2l-1-2를 제외한 투자중개업의”로 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투자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78조제1항제10호 중 “방법 등을”을 “방법 등과 분쟁조정규정(법 제405조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거래소

에 자료 등을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로 한다.

제87조제1항제2의3호, 제99조제2항제2의3호 및 제109조제1항제2의3호 중 “증권시장에서”를 각각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 다)에서”로 한다.

제1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채증권 또는”을 “국채증권,”으로 하고, “채무증권으로서”를 “채무증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권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외국정부 또는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3의2호 중 “다음”을 “직접 공모의 경우에는 다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방법에 의한 증권의 매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6조의5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더 큰”을 “더 크거나 그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합병가액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방법의 가치가 그 주권상장법인의 가치보다 더 큰”

제18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1 인가업무 단위 중 21-1-1 또는 21-1-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대차거래의 중개·주선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 금융기관이 매수계약을 체결한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매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7조제4항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36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 제182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6일부터, 제17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가 합병을 위하여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증권 투자중개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별표1 인가업무 단위 중 2-1-1 또는 2-1-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

(단위: 억원)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최저자기 자본
1-1-1	투자매매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0
1-1-2	투자매매업	증권	전문투자자	250
1-11-1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
1-11-2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100
1-111-1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75
1-111-2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전문투자자	37.5
1-12-1	투자매매업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0
1-12-2	투자매매업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125
1-13-1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1-13-2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25
11-1-1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
11-1-2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증권	전문투자자	100
11-11-1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80
11-11-2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40
11-111-1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0
11-111-2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전문투자자	15
11-112-1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사채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11-112-2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사채권	전문투자자	20
11-12-1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11-12-2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50

11-13-1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11-13-2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10
11r-1r-1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12-112-1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한다)	사채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12-112-2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한다)	사채권	전문투자자	30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1-2-2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전문투자자	50
1-21-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1-21-2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5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900
1-3-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전문투자자	450
1-31-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50
1-31-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25
1-32-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50
1-32-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25
1-321-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80
1-321-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90
1a-1-2	투자매매업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이 영 제7조의3제1항1호 및 제3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 상품	전문투자자	300
1a-4-2	투자매매업	이 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 상품	전문투자자	150

2-1-1	투자중개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2-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20
2r-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5
2l-1-1	투자중개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l-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5
2-11-1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1-2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5
2-12-1	투자중개업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2-2	투자중개업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5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3-2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5
2-14-1	투자중개업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4-2	투자중개업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5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2-2-2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전문투자자	10
2-21-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21-2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5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2-3-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전문투자자	50
2-31-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2-31-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5
2-32-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주권 외의 것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2-32-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주권 외의 것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5
2-321-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통화 · 이자율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2-321-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통화·이자율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10
2a-1-2	투자중개업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이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매매체결대 상상품	전문투자자	200
2a-4-2	투자중개업	이 영 제7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전문투자자	100
2i-11-2i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30
3-1-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 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80
3-11-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1호·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3-12-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집 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3-13-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집 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4-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 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0
4-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 재산	전문투자자	125
4-1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30
4-1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65
4-12-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 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20
4-12-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 재산	전문투자자	60
4-12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 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4-12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 재산	전문투자자	50

비고

1. 제7조제1항의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1-1-1 또는 1-1-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1-3-1 또는 1-3-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1-11-1, 1-11-2, 1-111-1, 1-111-2, 1-12-1, 1-12-2, 1-13-1, 1-13-2, 11-11-1, 11-11-2, 11-111-1, 11-111-2, 11-112-1, 11-112-2, 11-12-1, 11-12-2, 11-13-1, 11-13-2, 12-112-1, 12-112-2, 2-11-1, 2-11-2, 2-12-1, 2-12-2, 2-13-1, 2-13-2 및 2i-11-2i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한다.
3. 11r-1r-1은 제181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만 해당한다.
4. 2r-1-2는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제7조 제4항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5. 1a-1-2, 1a-4-2, 2a-1-2 및 2a-4-2는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6. 2i-11-2i는 제179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7. 2-1-1, 2-1-2, 2-12-1 및 2-12-2는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하며, 2-1-1, 2-1-2, 2-11-1 및 2-11-2는 이 영 제179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8.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11-13-1 및 11-13-2의 최저자기자본은 해당 최저자기자본의 2분의 1로 한다.
9.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적용할 때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에 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0. 삭제 <2015.10.23.>

11. 삭제 <2015.10.23.>
12.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3. 1a-1-2, 1a-4-2, 2a-1-2 및 2a-4-2의 투자자의 유형은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채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4. 법 제249조의3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자가 3-1-1, 3-11-1, 3-12-1, 3-13-1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 표에 따른 자기자본은 이 표에서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에서 10억원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5. 법 제103조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업무는 4-121-1 및 4-121-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6. 2l-1-1 및 2l-1-2는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증권외의 대차거래를 단순중개(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증권외의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대차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거래소시장, 해외 증권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되어 거래(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상품 또는 전문투자자[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7. ----- ----- ----- ----- ----- . -- ----- ----- ----- ----- ----- ----- <u>매매 (다자간매매채결회사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u> ----- ----- ----- -----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
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로 한정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제7조의3(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③·⑤ (생략)

제19조의3(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

제7조의3(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 및 증권시장에 상
장된 파생결합증권 중 기초자
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
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
권

3.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① 법 제16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같은 표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중 1a-1-2 및 2a-1-2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 중 투자중개업의 경우: 투자중개업에 속하는 인가업무 단위 중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

② (생략)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1. 2. (생략)
- <신설>

② (생략)

단위 추가등록) ① -----

1a-1-2, 1a-4-2, 2a-1-2 및 2a-4-2는 ----.

1. (현행과 같음)
2. -----
----- 같은 표 2-14-1, 2-14-2, 2l-1-1 및 2l-1-2를 제외한 투자중개업의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투자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
채결회사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①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 9. (생략)

10. 지정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 (법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거래소에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11. · 12. (생략)

② ~ ⑤ (생략)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① -----

1. ~ 9. (현행과 같음)

10. -----

----- 방법 등과 분
쟁조정규정(법 제405조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을 말한다)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정거래소에
자료 등을 제공하는 절차 및 방
법 등을 --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

-----.

1. ~ 2의2. (생략) 2의3.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u>증권시장에서</u> 매수하는 경우 2의4.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생략) ② 법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2의2. (생략) 2의3. 법 제9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u>증권시장에서</u> 매수하는 경우 2의4. ~ 5. (생략) ③·④ (생략)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 ----- ----- ----- <u>증권시장(다자간매매 체결회사를 포함한다)에서</u> -- 2의4.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 ----- ----- ----- <u>증권시장(다자간매매 체결회사를 포함한다)에서</u> -- 2의4. ~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
--	---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의2. (생략)

2의3. 법 제108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2의4. ~ 5. (생략)

②·③ (생략)

제124조의2(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또는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외국정부 또는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

----- 증권시장(다자간매매 체결회사를 포함한다)에서
--

2의4.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4조의2(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채증권, -----

---- 채무증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권으로서 -----

-----.

1. 발행인-----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
할 것

2. ~ 4. (생략)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는 모집·매출) ① 법 제130
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말한다.

1. ~ 3. (생략)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는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좌를 개설할 것
<단서 신설>

4.·5. (생략)

② ~ ⑥ (생략)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 ③ (생략)

④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
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
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2. ~ 4. (현행과 같음)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는 모집·매출) ①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직접 공모의 경우에는 다
음 -----

-----.
단,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장외거래방법에 의한 증권
의 매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주권
상장법인이 법 제161조제1항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
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를 기준으로 자산총액·자본
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
이 그 주권상장법인보다 더
큰 주권비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나. (생략)

⑤ ~ ⑬ (생략)

제182조(증권의 대차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에 대
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
다. <단서 신설>

-----.

2. -----

----- 더
크거나 그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합병가액을 고려하여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법인의
가치가 그 주권상장법인의 가
치보다 더 큰 --

가.·나. (현행과 같음)

⑤ ~ ⑬ (현행과 같음)

제182조(증권의 대차거래) ① ---

---. 다만, 별표1 인가업무 단위
중 21-1-1 또는 21-1-2의 인가
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대차거

② · ③ (생략)

② · ③ (생략)

래의 중개·주선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18 –

가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참가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1. ~ 3. (생략) 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u>증권시장</u>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그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는 업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참가회사만 해당한다) 제368조(시장효율화위원회) ① 법제4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 ~ ⑤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u>----- ----- ----- ----- ----- ----- 제368조(시장효율화위원회)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다자간매매체결회사</u>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 2100 - 2652